치과대학 졸업역량 제위원회 규정집

(내규 및 운영지침)

TOWARDS GLOBAL EMINENCE

2025. 9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치과대학 졸업역량 제위원회 규정집

(내규 및 운영지침)

TOWARDS GLOBAL EMINENCE

2025. 9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C O N T E N T S

1	치과대학 역량체계도	**5**
2	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	**9**
3	치과대학 졸업역량평가 운영지침	19
4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21**
5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내규	**25**
6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운영지침	**29**
7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내규	**33**
8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운영지침	**37**
9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내규	**41**
10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운영지침	**45**
11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49

치과대학 역량체계도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치과대학 역량체계도 (2025.06.30. 개정)

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양식 1] 교육과정 요약표

치과대학 교육과정 요약표(2025)

1. 교육목적

우수한 인성과 수행역량을 갖춘 치과임상의 및 치의학연구자를 배출하여 지구촌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하도록 한다

2. 교육목표

· 치의학 제반 질환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한 지식과 술기를 습득한다.
· 시대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적인 평생 학습 태도를 기른다.
· 환자와 사회에 대한 치과의사로서 책임감과 윤리관, 인간성을 함양한다.

3. 교육과정 기본구조표

학부/학과/전공/트랙명(프로그램명)			졸업학점	단일전공과정					다전공과정				부전공과정		
				전공학점				타전공인정학점							
학부(과)명	전공명	트랙명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전공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계
치의예과	-	일반	67	21	17		38								
치의학과	-	일반	174.5		168.5	6	174.5								

4. 교육과정 편성 교과목 현황

학부(과)/전공명		편성 교과목 현황								전공필수+전공선택 (B+C)	
학부(과)명	전공명	전공기초 (A)		전공필수 (B)		전공선택 (C)		전공선택(교직) (D)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과목수	학점수
치의예과		11	21	8	17						
치의학과				119	168.5	5	10			124	178.5

5. 졸업능력인증제 : 해당 사항 없음

6. 기타 졸업에 필요한 사항

· 졸업논문은 졸업역량평가로 대체한다.
· 2018학년도 이후 신입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소프트웨어 기초지식 습득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 SW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양식 2] 교육과정 시행세칙

치과대학 교육과정 시행세칙(2025)

제 1 장 총 칙

제1조(교육목적) ① 경희대학교 치과대학의 교육목적은 우수한 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치과 임상의 및 치의학 연구자를 배출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치의학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일반원칙) ① 치과대학 학생은 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② 교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 2 장 교양과정

제3조(교양이수학점) ① 교양과목은 교양교육과정 기본구조표에서 정한 소정의 교양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교양과목은 치의예과 과정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치과대학 개설 과목으로 치의예과 과정의 일반생물학1(2학점)과 일반생물학2(2학점)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양교육과정의 배분이수교과 영역 중 [생명,우주,인간] 영역(3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 3 장 전공과정

제4조(졸업이수학점) ① 치과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치의예과는 67학점, 치의학과는 174.5학점으로 한다.
② 소정의 전공과 교양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잔여학점을 교양 또는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를 통해 충족하여야 한다.

제5조(전공이수학점) ① 치과대학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은 '별표1 교육과정편성표'과 같다.
② 치의예과 및 치의학과를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본 시행세칙에 따라 소정의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치의예과 : 전공기초 21학점, 전공필수 17학점 이수하여야 한다.
2) 치의학과 : 전공선택 6학점, 전공필수 168.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치의학과 전공선택과목은 치의학과 3학년 1학기까지 최소 6학점(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진급 및 졸업요건

제6조(진급요건)
① 치의예과에서 치의학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리더십과사회적책무실천(치의

예과)와 글로벌기초역량(치의예과)를 이수해야 한다.

② 치의예과에서 치의학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치의예과 전체 이수과목의 총 평점평균이 1.7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리더십과사회적책무실천(치의예과)는 입학이후 리더십 및 자기계발에 관련된 학문분야 활동(학회 및 워크숍 참석), 교육분야 활동(자격증 취득, 리더십 관련 교육)과 사회적 책무 실천 활동(봉사활동)을 대상으로 하며, 치의예과 2학년 2학기 10월 31일까지 1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총 160시간 중에서 봉사활동이 최소 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회 및 워크숍 참석은 실제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리더십 관련 교육은 실제 참석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온라인 교육도 포함한다.
3. 자격증은 건당 20시간을 인정한다.
4. 교외 봉사활동시간은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행정자치부1365자원봉사포털, 두볼청소년자원봉사포털,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기관에서 최소 봉사활동시간의 50%인 4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5. 위 4호의 교외 봉사활동시간을 제외한 잔여 이수시간은 교내 학교 행사 및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다.
6. 교내 학교 행사 및 동아리 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6시간이며, 봉사 캠프의 경우 출발일과 도착일의 경우 각각 최대 3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7. 교내 학교 행사 및 동아리 봉사활동 참여 시 학과장에게 알리고 소정의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봉사활동 이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인정받는다.

④ 글로벌기초역량(치의예과)는 입학이후 취득한 성적을 대상으로 하며, 치의예과 2학년 2학기 10월 31일까지 다음의 1가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영어(TEPS 651점 이상 / NEW TEPS 355점 이상 / TOEIC 750점 이상 / TOEFL IBT 80점 이상 중 택1)
2. 중국어(HSK 3급 이상 / HSKK 중급 이상 / 신 BCT(B) 3급 이상 중 택1)
3. 일본어(JLPT N3 이상)
4. 스페인어(DELE B1 이상)
5. 프랑스어(DELF B1 이상)
6. 독일어 (CEFR B1 이상)

⑤ 치의학과 3학년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치의학과 2학년 2학기 10월 31일까지 기본심폐소생술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⑥ 리더십과사회적책무실천(치의예과)와 글로벌기초역량(치의예과) 및 기본심폐소생술자격증 진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진급을 불허하며 진급요건 충족 시까지 휴학하여야 한다. 동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학 중 휴학 가능기간에 산입된다.

⑦ 본 조항 2항에 해당하는 평점평균 미달 자는 진급을 불허하며 평점평균 요건 충족 시까지 전액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요건 충족 후 학년 진급 시까지 잔여학기는 휴학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은 재학 중 휴학 가능기간에 산입된다.

제7조(졸업요건)

① 치의학과 4학년 졸업을 위해서는 치의학과 1학년부터 4학년 2학기 10월 31일까지 160시간 이상의 리더십과사회적책무실천(치의학과)를 수행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총 160시간 중 봉사활동이 최소 8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리더십과사회적책무실천(치의학과) 인정기준은 제6조 3항의 치의예과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자격증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졸업논문은 졸업역량평가로 대체하고 합격/불합격(P/N)으로 처리하며 합격자는 졸업논문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졸업역량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치과대학 졸업역량평가 운영 지침에 따른다.
③ 2018학년도 이후 입학생(편입생, 순수외국인 제외)은 소프트웨어 기초지식 습득 및 마인드 함양을 위해 다음 각호의 SW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1. 치의예과 교육과정 중 정보탐색과근거기반치의학과 생물정보학개론을 모두 이수하여야한다.
2. 교양교육과정 중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지정한
   SW 교과목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5 장 기 타

제8조(유급 및 제적) 치과대학의 유급 및 제적 기준은 '[별표2] 유급 및 제적 기준표'와 같다.

제9조(보칙) 본 시행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항에 따라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부칙1]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적용은 2015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부칙2]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본 시행세칙 제3조(교양이수학점), 제5조(전공이수학점), 제6조(학년 진급요건)은 2015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에 대해서는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에 따른다.
②본 시행세칙 제4조②항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3]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6조④항은 2021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시행세칙 제3조③항 및 제4조①항은 2024학년도 치과대학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치과대학
졸업역량평가 운영지침

TOWARDS GLOBAL EMINENCE

치과대학 졸업역량평가 운영지침

시행일: 2021.03.01.
개정일: 2024.12.30.
개정일: 2025.09 .0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4장에 따른 졸업예정자의 졸업역량 판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원칙)
졸업역량의 평가는 영역별 관련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교육과정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며 졸업역량평가회의 의결로 최종 판정한다.

제3조(졸업역량 판정 기준)
졸업역량은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4장을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3개 영역에 대해 평가·판정한다.

1. 지식영역: 치과대학 역량평가 체계 중 지식영역 평가 3에 해당한다. 지식영역은 필기시험 2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하며, 1차 30%, 2차 70%를 반영한 전체 평균이 6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역별 점수 또는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연도들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비교·고려하여 판정할 수 있다.
2. 술기영역: 치과대학 역량평가 체계 중 술기영역 평가 2에 해당한다. 술기영역은 직접 환자 안전 진료를 위한 기구 및 재료 사용, 진단 및 치료 수행 전반에 대한 복합적 술기 평가로서 OSCE 2와 환자 대상 진료수행으로 구분하여 Pass/Non-pass로 평가한다. OSCE 2는 결과평가와 과정평가를 통합하여 판정하며, 환자 대상 진료수행은 임상역량수행지침서 Part III의 졸업역량 평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3. 태도영역: 치과대학 역량평가 체계 중 태도영역 평가 3에 해당한다. 태도영역은 치의학과 교육과정 이수 기간 중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4장 제6조 제3항의 ‘리더십과 사회적 책무실천’ 기준에 근거하여 성취 여부를 판정한다.

제4조(평가절차 및 시기)
교육과정위원회가 졸업역량 각 영역에 대한 관련 위원회들의 평가 결과를 12월 중 수합하여 1차 심의 상정하는 내용을 졸업역량평가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제5조(최종 판정)
졸업역량 성취에 대한 최종 판정은 3개 영역에 대한 학생 개인별 및 전체 성취도 종합 분석, 영역별 추가 학습 피드백 및 재평가 결과, 최근 2년간 졸업역량 성취 결과를 근거로 졸업역량평가회에서 통합적으로 판정한다.

제6조(졸업역량 성취 결과 관리)

교육과정위원회는 졸업역량 성취 결과를 최근 2년간 자료와 함께 비교 분석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시행일) 본 지침은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③(시행일) 본 지침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운영에 관한 내규 제7조에 의하여 치과대학의 교육과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교육실장과 전공교실 전공주임교수, 학생대표 2인으로 한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교육의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과목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치의학과 진급단계 지식영역1 역량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5. 치의학과 임상수행준비도 지식영역2 역량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졸업예정자 지식영역3 졸업역량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
7.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가 상정한 임상실습교육과정 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가 상정한 임상술기시험교육 평가 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9.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가 상정한 태도영역 역량평가 결과 심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교육용 기자재의 도입·설치 및 설치 장소 변경에 관한 사항
11.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5조(특별위원)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연구시킬 목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보고)
위원회는 심의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치과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중요사항 여부는 본 위원회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매학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간사 및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6월 30일부로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가 전환된 이후 시행한 모든 심의는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를 준용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치과대학으로 학제가 완전히 전환된 이후 시행한 모든 심의는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를 준용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내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운영에 관한 내규 제7조 및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의하여 임상실습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연구 심의하기 위한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로서 설치하는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치의학과장, 교육과정위원회 위원장, 경희대학교치과병원 교육부장, 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교육부장,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종합진료실장, 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임상과장단으로 한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임상실습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상실습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종합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환자대상 진료수행 영역의 졸업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상실습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5조(특별위원)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연구시킬 목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보고)
위원회는 심의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치과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중요사항 여부는 본 위원회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간사 및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운영지침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치과대학 임상실습운영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규 제4조에 따라 치과대학생의 환자대상 진료수행 졸업역량의 교육, 평가, 피드백 및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자 대상 진료수행 졸업역량평가)
① 증례 평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개인별 임상역량수행지침서를 활용한다.
2. 평가는 경희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평가는 지도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시행한다.
4. 학생은 스스로 문진, 임상검사, 진단, 치료계획 수립 및 술기 시행을 수행한다.
5. 학생은 증례에 대한 자율평가를 실시한 후 지도교수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는다.
6. 지도교수는 학생별 졸업역량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② 환자 대상 진료수행 졸업역량 성취의 기록 및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교육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임상역량수행지침서를 11월 중 본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위원회는 해당 학생의 임상실습 내용 및 수행 수준을 검토하여 졸업역량 성취도를 평가한다.
3. 위원회는 문진부터 최종 치료 후 환자 교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고 합격 여부를 판단한다.
4. 위원회는 임상역량수행지침서와 종합평가서를 12월 중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임상역량수행지침서)
① 임상역량수행지침서는 일차 치과임상의가 갖추어야 할 환자 대상 진료수행 영역의 졸업역량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평가 및 피드백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② 임상역량수행지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내실습의 제반 사항 및 학기별 임상실습교육의 내용과 목적
2. 각 전공과별 원내생 임상실습교육의 내용과 과정 및 결과 평가 기준
3. 개별적 자기주도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및 피드백 기준
③ 위원회는 매년 활용도 및 성취도 결과를 분석하여 임상역량수행지침서의 개정에 반영한다.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내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운영에 관한 내규 제7조 및 치과대학 교육과정위원회 내규 제6조에 따라 임상술기시험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육과정위원회 산하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심의한다.
1. 임상수행 준비역량 OSCE1 및 OSCE2 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상술기시험 문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임상술기시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임상술기시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5조(특별위원)
본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이나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연구시킬 목적으로 특별위원을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본 위원회는 심의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치과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중요사항 여부는 본 위원회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본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회의록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간사 및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②(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운영지침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치과대학 임상술기교육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내규 제4조에 따라 치과대학생의 환자대상 진료수행을 위한 준비역량의 교육 및 평가, 졸업 직후 일차 치과임상의로서 갖추어야 할 졸업역량의 성취, 치과의사 국가자격 실기시험에 필요한 추가 교육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상술기역량 교육·평가 프로그램의 운영)
① 술기영역 평가1(임상술기 집중교육 및 평가, OSCE1)
: 치의학과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직접 환자 진료를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임상술기역량의 교육 및 성취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는 2월 중 해당 교육 및 평가 일정을 수립하여 공지한다.
2. 모든 임상과는 학생이 성취해야 할 역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한다.
3. 해당 과정의 교육 및 평가 종료 후 학생들의 안전한 환자 대상 진료 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4. 해당 년도 학생들의 역량 평가 결과를 최근 2년간의 평가 결과와 비교 분석하고,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② 술기영역 평가 2(임상술기 집중교육 및 평가, OSCE2)
: 치의학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졸업 직후 일차 치과임상의로서 안전한 환자 진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주요 임상술기 역량과 치과의사 국가자격 실기시험에 필요한 역량의 성취 여부를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임상과는 학생의 직접 환자 진료 및 치과의사 국가자격 실기시험 준비를 위해 학생이 성취해야 할 역량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지한다.
2. 학생들의 환자 대상 진료 수행을 위한 준비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교육 대상자를 선정하여 일정을 공지한다.
3. 해당 년도 학생들이 졸업 후 일차 치과임상의로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안전한 환자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와 수준에서 평가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최근 2년간의 평가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해당 교육프로그램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차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제3조(임상술기 졸업역량 평가)
① 위원회는 치의학과 3학년 학생들의 OSCE1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생 개인별 역량 성취도 종합 분석 및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한다.
② 위원회는 치의학과 4학년 학생들의 OSCE2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학생 개인별 최종 졸업역량 성취도 평가를 위한 자료를 10월 중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한다.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내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운영에 관한 내규 제7조에 따라 치과대학의 학생활동 지도, 상담 및 장학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학생지도실장 및 각 학년 담임교수로 한다.
②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학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장이 추천할 수 있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치의학과 진급단계 태도영역1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2. 치의학과 임상 역량 수행 준비 태도영역2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3. 졸업예정자 태도영역3 졸업역량평가에 관한 사항
4. 학생장학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5. 학생 상벌에 관한 사항
6.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학생 동아리의 활동에 관한 사항
8. 학생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생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5조(특별위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 또는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제6조(보고)
위원회는 심의한 중요 사항을 치과대학 교수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중요 사항 여부는 본 위원회 또는 학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개최)
위원회는 매 학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이를 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간사 및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6월 30일부로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학제가 전환된 이후 시행한 모든 심의는 치과대학 학생지도위원회를 준용하여 심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운영지침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지도 및 장학위원회 내규 제4조에 따라, 학생들의 졸업역량과 관련된 시기성과 평가의 주요 내용 및 절차를 정하고, 그 성과 관리 결과를 교육과정 개선 및 질 관리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의학과 진급 요건 성과 평가)
① 글로벌 기초역량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글로벌 기초역량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비전인 존경받는 글로벌 치과의사 양성의 성취를 위한 기본 역량으로서, 외국어 역량 성취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글로벌 기초역량의 성취 여부는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치의예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취득한 공인 외국어 성적 증빙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한다.
3. 위원회는 차년도 치의학과 진급 대상 학생들의 성취 현황을 정리·평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한다.
4. 위원회는 학생들의 공인 외국어 종류 및 성적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리더십과 사회적 책무 실천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더십과 사회적 책무 실천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비전 성취를 위한 7개 핵심가치 (HELPERS)의 실천을 목표로 설정한 성과로서, 해당 기준의 성취 여부를 평가한다.
2. 성취 여부는 교육과정 시행세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치의예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당해 연도 10월 31일까지 인정받은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위원회는 차년도 치의학과 진급 대상 학생들의 성취 현황을 정리·평가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상정한다.
4. 위원회는 리더십 및 사회적 책무 실천의 유형 및 실적에 대한 최근 2년간의 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치의학과 시기성과 평가)
① 환자안전 역량(기본심폐소생술)의 성과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안전 역량은 임상역량수행 준비 단계의 역량으로서, 치의학과 학생들이 임상실습교육 이수 이전에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위원회는 당해 연도 치의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기본심폐소생술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치의학과 3학년 진급요건 충족 여부 판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3. 위원회는 당해 연도 평가 결과를 진급요건 피드백 차원에서 정리하여 교육과정위원회에 보고하고, 자체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기본치의학교육 평가인증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학장에게 보고한다.
1. 치과대학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제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2. 정기 및 중간 인증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분석하고 적용 및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다.
4. 정기 인증평가와 관련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치과대학 교무위원회와 협력하여 준비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장은 학장이 겸직하거나 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치과대학 교무위원 및 제 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평가인증 기준 영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자체평가 및 인증평가 수행에 필요한 교수 및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9월 1부터 시행한다.
②(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